

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 행정규제 완화계획

-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-

정부는 지난 6월 29일 果川청사에서 韓利憲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,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제를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·해운항만·환경산업·제약산업·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.

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내용이다.

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

1. 에너지산업의 현황

-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급증,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, 에너지 소비구조도 석유, 전력, 가스 위주

로 급격히 고급화되고 있어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6% 수준에 도달

-이러한 에너지소비의 양적증가와 질적 고급화는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, 이에 따른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

- 에너지 공급능력의 확충에는 장기간의 계획 및 건설기간, 막대한 자금, 그리고 입지와 관련기술의

확보가 중요하나, 장기계획에 대한 국민일반의 이해부족,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, 해당지역의 반발에 따른 입지확보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

2. 규제완화 추진실적

가. 총괄

(단위 : 건)

	대상과제	완료과제	추진과제	비고
계	116	50	66	
경제행정규제	41	30	11	
기업활동규제	44	7	37	
행정쇄신	31	13	18	

나. 주요 조치완료사항

- 주유소 영업시간을 06~24시로 제한하고 격주 단위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하였으나, 모두 폐지 (93. 7)
- 가스안전관리책임자의 정기교육을 매년 1회에서 매 2년 1회로 완화(94. 3)
- 고압가스 설비 또는 배관에 대한 기밀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(94. 3)
- 전기공사업자의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 업무는 제1종은 한국전기공사협회, 제2종은 시·도지사로 하도록 하였으나 제1종 및 제2종 구분없이 한국전기공사협회로 일원화(94. 6)
- 출력 3천KW 이하 수력발전 설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(93. 11)
- 연탄공급구역제 폐지(93. 5)
- 검사과정에서 가동중단으로 인한 수검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체의 설비보수·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해년도 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(94. 2)
- 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기준을 연료 및 열의 경

우 중전의 연간 사용량 250TOE이상에서 500 TOE이상으로, 전기의 경우 1백만KWH 이상에서 2백만KWH이상으로 상향 조정(93. 8)

3. 주요 규제완화내용

가. 기본방향

- 국내에너지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
 - 에너지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민간의 책임경영 유도
 -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확대
- 안전관리 및 비상시 수급안정을 위해 현행 규제수준은 유지하되 규제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
-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
 -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지구환경규제에 대비하여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을 검토

나. 주요 개선내용

《石油분야》

- (1) 석유정제업 허가제도 완화 등(유가자유화 예고시점)
 - 석유정제업의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
 - 정제시설의 신·증설시 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
 - 석유수출입사업자의 저장시설 설치의무용량을 현행 60일분에서 45일분으로 완화
 -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허가제를 유가자유화 추진일정에 맞추어 폐지
- (2) 윤활유, 항공유, 이스팔트 등의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 폐지(94년 하반기)

- (3) 수입석유제품의 품질검사제 완화(94년 상반기)
 - 윤활유, 자동차용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자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생략
- (4) 나프타(석유화학원료)에 대한 수출입 승인제 폐지(94년 하반기)
- (5) 석유(제품)에 대한 수출입 승인제 폐지(94년 하반기)
- (6) 송유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휴·폐지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(94년 상반기)
- (7) 송유관사업법인의 해산결의시 현행 인가제를 폐지(95년 상반기)

《가스분야》

- (8) 액화천연가스 중단기 도입 및 수송계약에 대한 승인제는 폐지하고 장기계약에 대해서만 승인제 유지(94년 하반기)
- (9)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요건 완화(94년 하반기)
 -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기구가 15이하이고, 용기저장량 250kg 미만인 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
- (10) 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승인제 완화(94년 하반기)
 -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체결시 현행 승인제를 일정기준 이하의 현물수입계약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전환(94년 하반기)

《전력분야》

- (11) 민간발전기업의 전기판매제한완화(94년 하반기)
 - 민간발전사업자가 동일구역내 겸업설비 및 사원용 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겸업설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공급구역 확대 추진
- (12) 전기설비의 설치 허가제도 완화(94년 하반기)
 -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·변경에 관하여 현행 허가제를 동일용량 범위내에서 개·보수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단순신고로 완화

- (13) 전기설비의 정기검사제도 개선(94년 하반기)
 -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주기를 업체의 안전관리 능력, 사고발생가능성 등에 따라 차등 조정
- (14) 전기공사업 면허제도 개선(94년 하반기)
 - 전기공사업에 대한 면허를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발급
- (15) 전기공사의 수급한도 제한 완화(94년 하반기)
 - 전기공사업의 수급한도액 산정시 공사실적과 자본금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

《광업분야》

- (16)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(95년 상반기)
- (17) 광산보안교육의무 완화(95년 상반기)
 - 보안관리자, 감독자 : 2년당 24시간에서 2년당 14시간으로 축소
 - 보안계원, 감독계원 : 5년당 24시간에서 5년당 21시간으로 축소
- (18) 광산보안관리직원 선임의무 완화(94년 상반기)
 - 광산보안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보안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방안 강구

《에너지관리분야》

- (19)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(94년 하반기)
- (20) 열사용기자재 형식 승인제도 개선(95년 상반기)
 - 태양열 집열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(95년 상반기), 97년에는 형식승인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 강구
- (21)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제도의 등록제 전환(94년 하반기)
 -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대상을 현행 21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축소